

대기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I. 대기환경보전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3-4-4.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연재

❖ 근거 규정 : 법 제32조제4항, 시행규칙 제37조

가. ‘적산전력계’ 운영 ·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9 참조)

-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
- 적산전력계는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9 참조)

-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 다만,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로 상시 전송
-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다만,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 사용으로 교정을 갈음

3-4-5. 측정기기의 운영시 금지행위

❖ 근거 규정 : 법 제32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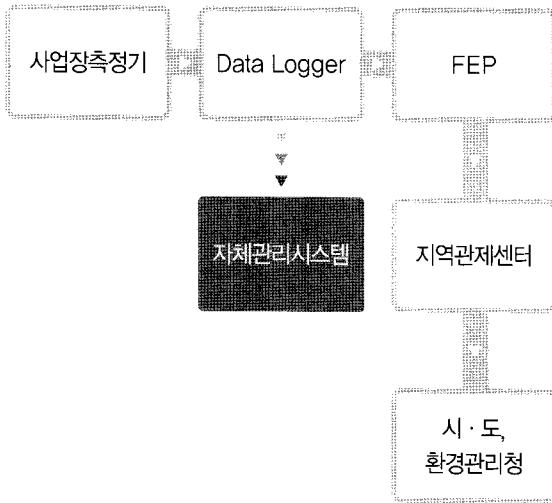
○ 측정기기 운영 시 금지행위

- 배출시설 가동 시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측정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3-4-6. 측정자료의 전송

환경부 장관은 측정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제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측정결과를 당해 배출시설을 관할하는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되도록하여야 함



3-4-7. 측정결과 활용

- 가. 굴뚝자동측정기에서 자동측정되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나. 측정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타에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 판단은 30분평균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1주에 7회 이상 초과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 다. 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2시간전)전까지 관제센터에 보고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로서 사고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타에 통지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3-4-8. 관제센터 설치현황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관할 사업장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9-252호, 2009. 10. 20)

명칭	설치위치	관할구역
수도권관제센터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부권관제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관제센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영남권관제센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3-5.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3-5-1. 지역의 지정

- 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

- 나.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그 지역의 환경기준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음

3-5-2. 규제지역 지정범위

- 가. 대기환경규제지역(환경부고시 제97-51호, 제99-191호)

명칭	지정범위	대상오염물질
서울특별시	전역	오존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제외(영종면은 포함)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부산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오존, 이산화질소
대구권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양만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임면 제외) •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강·의서·낙안·별양·상사·황전·월등면 제외) •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오존

나.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 환경기준의 80%이하수준
- 규제지역지정 고시 후 10년이내

다. 실천계획수립 : 지정 · 고시 후 2년 이내

3-5-3. 규제지역의 관리

가.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규제

나. 규제지역에 대하여는 굴뚝자동측정기 조기부착 추진

3-5-4. 특별대책지역과의 비교

구 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요건	생태계변화 등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	대기환경기준초과
지정상격	위험지역	도시지역 대기관리
지정목표	인체피해, 동·식물 보호	대기환경기준 달성
지 정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개선주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지 정 일	울산지역 : 1986. 3, 여수지역 : 1996. 9. 26	99. 12. 1

3-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신고 및 관리

-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시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6-1. 제도개요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도는 적정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한 시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제한을 해제한다는 의미로서 「행위제한의 완화」로 정의할 수 있음
- 한편, 행정작용법에서는 허가 및 신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그 예로 영업허가 · 건축허가 등이 있음
 - * 신고 : 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축 · 영업과 같은 행위는 행정청의 허기가 있어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약국의 개업 등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는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할 수 있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있음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는 신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 우리나라와 외국의 허가제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미 국
배출시설규제	허가 및 신고	신고제	허가제
규제방식	농도규제	농도규제, 총량규제	농도규제, 총량규제 (일부 주)
허가 및 신고 처리기간	10일	공사착공 60일전에 신고 그로부터 2개월 (60일) 이내에 처리	지자체에서 일단 검 토후 30일간 공시, 60일간 EPA 탄원기 간 경과후 EPA의 45일간 검토 후 완료

- 배출시설 설치신고 제도는 일반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달리, 대물신고로서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적정 방지시설의 설치여부,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적합 여부(예, 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입지금지)등이 함께 검토됨. 따라서 대기배출시설에서의 설치신고는 일반 행정법 등에서 정의하는 신고와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3-6-2. 허가 및 신고의 정의

- 가. 전국을 「배출시설 설치금지지역」으로 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한해제」의 성격을 지님

- 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치 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법 제23조 제1항)

* 「설치」는 시설의 설치는 물론, 전기 배관 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즉각적인 가능성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갖다 놓거나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음

다.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법 제23조 제2항)

3-6-3. 허가 및 신고대상

가. 허가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나. 신고대상 :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제외한 모든 배출 시설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처
다음호에 계속 ...

